"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가스안전 책임기관 "

한국가스안전공사

가스안전 행복한 습관 Happy Check

받 음 수신자 참조

참 조

제 목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

1. 귀 협회(연합회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, **굴착공사 개시 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신고**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
3. 동 신고 제도는 상·하수도, 가스, 전기, 통신, 도로, 건물 신축공사 등의 굴착공사로 인해 지하 매설 배관 파손사고가 발생하면 가스폭발 위험과 함께 **인명피해를 초래**하고, 굴착공사자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, 굴착공사 **개시 전에 지하 매설배관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**하여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<미신고 벌칙사항>

◈ **도시가스사업법 제50조(벌칙)**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◈ **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9조(벌칙)**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4. 따라서, 협회(연합회)의 회원사가 굴착공사를 개시하기 전 원활히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: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문 1부. 끝.

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

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의인

수신자 :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,대한전문건설협회,대한건설협회,대한주택관리협회,대한건설기계협회,한국태양광산업협회,한국상하수도협회,한국패시브 건축협회,공육굴삭기협회,월간중기인,전국건설기계연합회

대리 **윤신혜** 센터장 전결04/30 **이충경**

협조자

시행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-429 (2019.04.30.) 접수

우 06332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183 / www.kgs.or.kr

전화번호 02-2038-3981 팩스번호 0505-106-4501 / ysh0428@kgs.or.kr / 비공개(7)

국민과 함께,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